

1. 개정 이유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결과 우수한 통합관리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며, 연간 보고서에 사업장의 환경관리 관련 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의3)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작성 대행 자료 보존기간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나. 통합허가대행업자 연간보고서 항목 추가(안 제35조, 별표9의2)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배출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해 연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다. 수시검사 항목 추가(안 제31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청의 수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라. 통합환경관리인 대행자의 대무 기간 지정(안 제25조의6)

- 통합환경관리인을 임시로 대행하는 자의 대무 기간을 최대 5개월로 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이 기간 이상 공석일 경우 새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마. 연간보고서 대행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4)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거짓·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바.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별표16의2)

- 허가업무 외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사업장의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는 인력 기준 별도 규정

사. 정기검사 주기 완화(안 제31조)

- 정기검사 주기를 1~5년으로 개선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을 정밀 진단한 결과를 연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호아목·자목”을 “제2호아목”으로, “이란 각각”을 “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1호(같은 호 가목22)부터 24)까지 및 다목4)는 제외한다)”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가목22)·23), 같은 호 다목4), 같은 표 제2호가목·라목·마목·바목 또는 사목”을 “제2호가목·라목·마목·바목·사목·자목·차목 또는 카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호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호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을 “제2호나목·다목 또는 아목”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돌려줘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를 “법 제11조의4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연간 보고서”로, “등록된”을 “각각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통합허가서류등”을 “통합허가 서류등 및 연간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조의4제3항”을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 및 제3항”으로 한다.

2.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할 것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3 제2호사목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악취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 협회
4.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제2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시책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한”을 “경우 한”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기술지원”을 “기술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서의 검토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장이 연간 보고서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검사의 주기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작성을 대행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제2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를 “원폐수”로, “폐수에”를 “원폐수에”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최적 환경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허가조건 등의 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한 결과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간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별표 16의2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을 위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확인하여 그 목록을 매년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10마력”을 “7.5kW”로 하며, 같은 목 2) 중 “20마력”을 “15kW”로 하고, 같은 목 3) 및 4) 중 “10마력”을 각각 “7.5kW”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10

마력”을 “7.5kW”로 하고, 같은 목 2) 중 “20마력”을 “15kW”로 하며, 같은 목 3) 및 4) 중 “10마력”을 각각 “15kW”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열분해 소각시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차. 수은회수시설

카. 선별시설(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분 및 별표 3 제2호자목”을 “부분”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6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사업장별”을 각각 “사업장 또는 배출구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업장”을 “사업장 또는 배출구”로 한다.

별표 9의2의 제목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9조의7 관련)”을 “통합허가서류등 및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대행하는 연간 보고서의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9조의3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 및 연간 보고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거짓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별표 9의2 제1호가목 중 “통합허가서류등과”를 “통합허가서류등 및 연간 보고서와”로, “작성하여”를 “작성하거나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합허가서류등과”를 “통합허가서류등 및 연간 보고서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배출영향분석”을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시 배출영향분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통합허가서류등”을 “통합허가서류등 및 연간 보고서”로 하며, 같은 호 중 “통합허가서류등을”을 “통합허가서류등 및 연간 보고서를”로, 같은 호 중 “통합허가서류등의”를 “통합허가서류등 및 연간 보고서의”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통합허가서류등과”를 각각 “통합허가서류등 및 연간 보고서와”로 한다.

별표 14 제1호나목 중 “경우 및”을 “경우, 제2호가목 비고6의 경우 및”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가목1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3항 후단				
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30일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사용중지				
(3)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30일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저감시설 개선명령				

(5) (1)~(4) 외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경고	사용중지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	----	------	-------------	-------------

같은 호 다목5) 중 “경우”를 “경우(단, 기술인력은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목 바)를 아)로 하고, 같은 란(중전의 8)바)) 8)아)(중전의 8)바)) 아) 중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를 “법 제11조의4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목에 바)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자가측정의 준수 여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자가측정의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준수 여부 등을 부실 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별표 14의 가목의 비고 6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다목의 비고를 삭제한다.

6. 위 표의 6)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이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4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합환경관리총괄관리자”를 “통합환경총괄관리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4의4 제1호나목 중 “취득한 이후”를 “보유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을 “환경”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취득한 이후”를 “보유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를 “4년 이상”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종사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취득한 이후”를 “보유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를 “9년 이상”으로, “9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종사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환경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은 비고 제1호를 적용한다.

별표 15 1호나목3) 중 “배출되는 연간”을 “연간”으로 하고, 같은 표 3호가목 3)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표 3호가목 중 “3)”을 “4)”로 하며, 같은 표 3호나목3)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류수수질기준”을 각각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4)에 따른 특례지역 중 공공폐수처리구역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간접냉각수(제품 및 원료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냉각수를 말한다)를 해양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그 간접냉각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

터 미만이면서 특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한국산업표준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환경전문심사원)”을 “(관계기관)”으로 하며, 같은 뒤쪽 중 “환경전문심사원”을 “관계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한국산업표준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뒤쪽 중 “(환경전문심사원)”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환경전문심사원”을 “관계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뒤쪽 나목 중 “제1호”를 “가목”으로 하며, 같은 뒤쪽 나목 중 “1부”를 “1부(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기술인력 포함)”로 하고, 같은 뒤쪽 라목 중 “기술인력”을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하며, 같은 뒤쪽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인력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계획서”를 “개선이행보고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SO₂, NO₂”를 “SO_x, NO_x”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4항”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4항”으로, 같은 서식 중 “연장을 승인합니다”를 “연장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로 한다.

[별표 16의2]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을 위한 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

1. 기술인력(가목 및 나목의 인력을 합하여 상근인력 총 2명 이상을 보유하되, 가목의 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구분	내용
가. 고급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일반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통합허가 관련 분야"란 대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소음·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연구, 화학공학 및 화학 등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의 기술인력으로 포함된 사람은 통합허가대행업, 타 통합허가대행업체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또는 다른 사업자[「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중 환경부문으로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포함될 수 없다.
4. 나목의 일반인력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기타

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업체이어야 함

나. 시설 및 장비는 현장 점검시 필요한 환경 및 안전 필수 장비 일체

<개정 2025. 10. 1.>

사전협의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35일
------	------	-----	-----

신청형식	[] 허가 전 사전협의	[] 변경허가 전 사전협의
------	---------------	-----------------

①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사업장 소재지)	

② 생산 제품 현황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5자리 기재)
	생산품명
	주 원료명

③ 입지 등 현황	공장 소재지		
	용도지역		입지제한지역 해당내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성조사서 작성 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공사 착공예정일		설치예정 기간(공사예정 기간)
	규모	사업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 먼지 []톤/년, SOx []톤/년, NOx []톤/년		
[] 중수도 설치대상		[] 관리대상기기 관리대상	

④ 배출 시설 등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물질발생량:[]톤/년	[]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량:[]㎥/일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 비산배출시설
	[] 비산먼지 발생사업	[] 소음·진동배출시설
	[] 비점오염원	[] 악취배출시설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⑤ 배출 오염물질등(배출 항목) 및 방지시설						
공정	배출시설등	용량 및 규격 (HP·kW·㎥)	조업시간	오염물질등 (전체매체)	배출량 (단위)	방지 및 억제시설

⑥ 최적가용기법 적용 여부	[] 적용	[] 미적용
----------------	--------	---------

⑦ 신청내용 :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⑧ 변경 사항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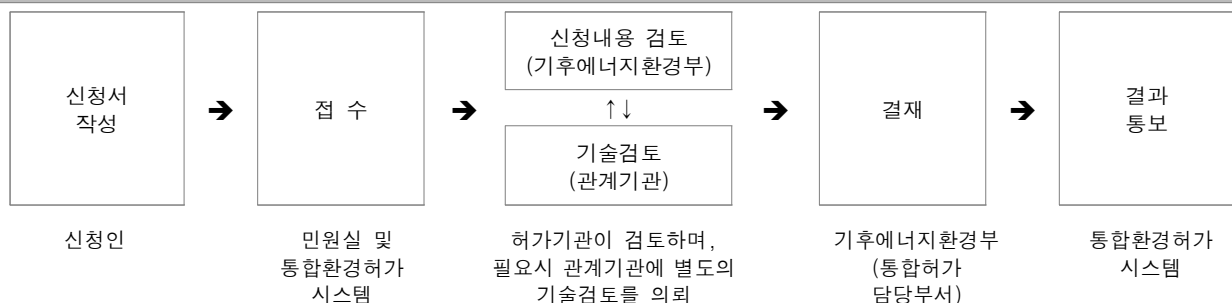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내용에 관한 계획서 1부	
------	-----------------	--

작성 요령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 대표자의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②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시 등록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업종명 및 해당되는 업종코드 5자리(세세분류)를 적기 바랍니다.
3. ③ 공장 소재지가 입지제한지역에 해당될 경우 ‘입지제한지역 해당내역’ 란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여부, 대기관리권역 해당 여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해당 여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설치 대상 여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기기 소유 여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④ 사업장에 설치될 배출시설등의 해당내역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⑤ 공정별 배출시설등, 오염물질등, 방지시설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상세내역 및 관련 근거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⑥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REF)의 최적가용기법(BAT) 및 최적가용기법 결론(BAT Conclusion)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상세내용은 허가 신청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⑦ 사전협의 신청내용에 해당하는 내역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⑧ 변경사유에는 변경허가의 해당 근거조항 및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
------	------	-----	------	---

결정번호 제 호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사업장 소재지)	
	업종	주 생산품

신고 해당내역	사업장 종류	대기 중, 수질 중
	해당 배출시설등([]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소음·진동배출시설, []비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잔류성오염물질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단계([]허가(최초), []허가(변경), []변경신고)	신고사유

가동개시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시운전	
	배출시설등명	시설용량	1일평균 가동시간	방지시설명	용량	대상 여부	시운전기간

측정기기 부착완료 ([] 대기, [] 수질)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년 월 일			
	확인 및 통합시험 가능일(예정일)			년 월 일			
	부착 내역	배출구 번호	측정항목	측정기기 모델명	측정방법	제조사	내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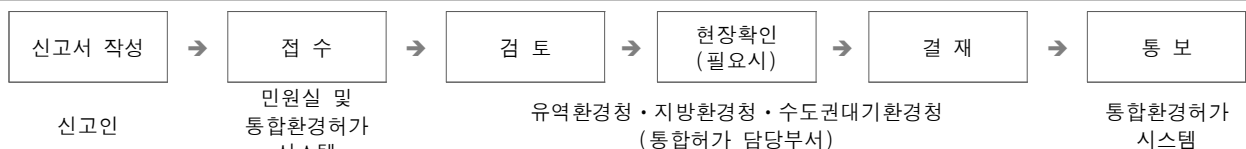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검토 결과서 원본	수수료 5,000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배출시설등
[] 방지시설
[] 측정기기

[] 개선계획서
[] 조치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결정번호 제 호		[] 개선명령, [] 조치명령				
제출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사업장 소재지)					
	업종		주 생산품			
개선 사유						
개선 기간						
개선의 내용 및 개선방법						
부적정 운영 기간 및 제한의 내용	시설명 및 측정기기명		(시설번호)	규격	수량	기간
	(시설번호)					
	항목					
오염물질등의 예상 배출농도 (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개월간의 평균배출농도)	농도					
폐수 위탁 처리	위탁처리방법		위탁업체명		위탁처리량	
					m³/일	
예상 평균 배출량	(가스)	m³/hr, (폐수)	m³/일	일일가동 예상시간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 또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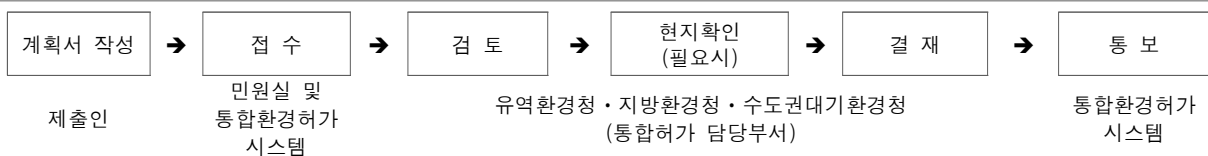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2)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2. 측정기기 조치계획서 가.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나.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서 1부 다. 자가측정 계획서 1부	
	3.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조치계획서: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배출시설등
[] 방지시설
[] 측정기기

[] 개선이행보고서
[] 조치이행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보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일 (검사기간 제외)
------	------	-----	------	-----------------

결정번호 제 호

보 고 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사업장 소재지)	
	업종	주 생산품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명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위치	
개선(조치) 사항	
개선(조치) 이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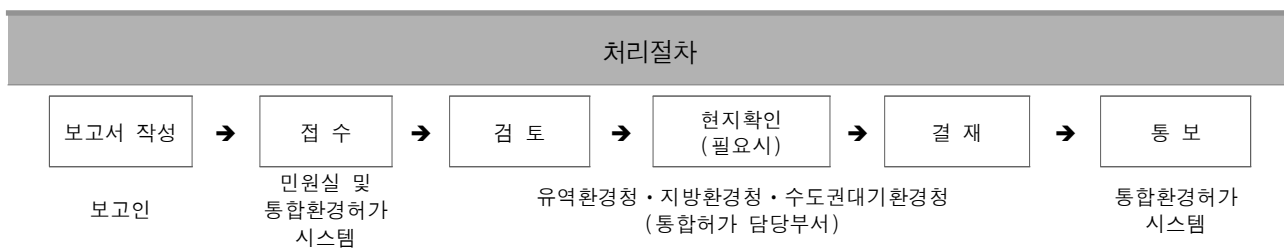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선(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 출 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종별		(대기)				
							(수질)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대 기 오 염 물 질	1.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										
	⑦ 배출구 번호	⑧ 주요배출시설명	⑨ 사용연료명	⑩ 사용연료량(톤, kl/반기)		⑪ 배출계수	⑫ 황함유량(%)	⑬ 확정배출량 (kg/반기)			
	⑭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kl/반기)					⑮ 확정배출량 합계 (kg/반기)					
	2. 제1호 외의 황산화물과 먼지의 확정배출량										
	황 산 화 물	⑯ 자가측정 등에 의한 배출량	⑯-1 배출구 번호	⑯-2 측정 일자	⑯-3 측정농도 (ppm)	⑯-4 일일가스유량 (Sm³/일)	⑯-5 일일 배출량 (kg/일)	⑯-6 일일평균 배출량 (kg/일)	⑯-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⑯-8 조업일수	⑯-9 확정배출량 ⑯-6×⑯-8 또는 ⑯-7×⑯-8
⑰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		⑰-1 배출구 번호	⑰-2 측정 일자	⑰-3 측정농도 (ppm)	⑰-4 일일가스유량 (Sm³/일)	⑰-5 일일 배출량 (kg/일)	⑱ 확정배출량 합계 (kg/반기)				

대기오염물질	먼지	①⑨ 자가측정 등에 의한 배출량	①⑨-1 배출구 번호	①⑨-2 측정 일자	①⑨-3 측정 농도 (mg/Sm³)	①⑨-4 일일가스유량 (Sm³/일)	①⑨-5 일일 배출량 (kg/일)	①⑨-6 일일평균 배출량 (kg/일)	①⑨-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①⑨-8 조업일수	①⑨-9 확정배출량 ①⑨-6×①⑨-8 또는 ①⑨-7×①⑨-8															
		②⑩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	②⑩-1 배출구 번호	②⑩-2 측정 일자	②⑩-3 측정 농도 (mg/Sm³)	②⑩-4 일일가스유량 (Sm³/일)	②⑩-5 일일 배출량 (kg/일)	②⑪ 확정배출량 합계 (kg/반기)																		
수질오염물질	②⑫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 산정																									
	구 분		월				월				월				월				월				합계	평균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배출 농도 (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																								
	일일폐수유량 (m³)																									
	일일 배출량 (kg)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																								

②③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 조정산정										
구분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	합 계	평 균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배출 농도 (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									
일일폐수유량 (m³)										
일일 배출량 (kg)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									
②④ 확정배출량산정										
구분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kg)				부과기간 중의 총 조업일수		확정배출량 (kg)		
유기물질										
부유물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년도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기록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황 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합니다)
4.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대기오염물질의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서류 1부(공동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6. 확정배출량이 영 별표 7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작성요령

○ 공통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각 항별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1. ⑦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⑧란은 ⑦란의 배출구 번호에 적합한 배출구와 관련이 있는 배출시설명을 적습니다. 다만,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각각 적습니다.
3. ⑨란은 ⑧란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명을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무연탄, BC유, BA유 등).
4. ⑩란은 ⑦란의 배출구에서 반기별로 사용할 연료의 양을 예측하여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등 고체연료는 톤으로, 액체연료는 kl 단위로 표시합니다).
5. ⑪란은 ⑨란의 연료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습니다(배출계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합니다).
6. ⑫란은 ⑨란의 연료에 함유된 황의 양을 연료별로 각각 적습니다.
7. ⑬란은 사용연료량, 배출계수, 황함유량을 각각 곱하여 확정배출량을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이를 적습니다.
8. ⑭란은 ⑨란과 ⑩란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를 적습니다.
9. ⑮란은 ⑬란의 각 배출구별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10. ⑯-1란과 ⑰-1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11. ⑯-2란과 ⑰-2란은 배출구별 자가측정의 결과를 일자별로 적어야 하며, 하나의 배출구에는 측정일자를 적어도 3회 이상 적어야 합니다.
12. ⑯-3란과 ⑰-3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측정농도를 측정날짜별로 각각 적습니다.
13. ⑯-4란과 ⑰-4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가스유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가스유량은 자가측정농도 측정시에 측정한 측정가스유량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일일가스유량은 시간당 측정가스유량과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의 평균치를 곱하여 적습니다.
14. ⑯-5란과 ⑰-5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 배출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 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text{황산화물 일일배출량(⑯-5)} = \text{측정농도(⑯-3)} \times \text{일일가스유량(⑯-4)} \times 10^{-6} \times 64 \div 22.4$$

$$\text{먼지 일일배출량(⑰-5)} = \text{측정농도(⑰-3)} \times \text{일일가스유량(⑰-4)} \times 10^{-6}$$
15. ⑯-6란과 ⑰-6란은 측정일자별로 각각 계산된 일일배출량을 배출구별로 합한 후 이를 자가측정의 횟수로 나누어 해당 배출구의 일일평균 배출량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배출구에 3회에 걸쳐 자가측정을 한 황산화물의 일일배출량(⑯-5)이 각각 30kg, 27kg, 33kg이라면 황산화물의 일일평균 배출량은 $(30+27+33) \div 3 = 30\text{kg}$ 이 됩니다.
16. ⑯-7란과 ⑰-7란은 ⑰란 또는 ⑳란에 적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⑯-1란 또는 ⑰-1란의 배출구번호와 ⑰-1란 또는 ⑳-1란의 배출구번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그 산정방식은 ⑯-6란의 일일평균 배출량과 ⑰-5란의 일일 배출량을 더한 후 이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1번 배출구의 일일평균 배출량이 30kg인데 ⑰-5의 검사결과에 의한 1번 배출구의 일일 배출량이 40kg인 경우에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은 $(30+40) \div 2 = 35\text{kg}$ 이 됩니다.
 - 만약, 1번 배출구의 ⑰-5의 검사결과에 의한 일일 배출량이 각각 40kg과 50kg으로 2번이 있다면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은 $(30+40+50) \div 3 = 40\text{kg}$ 이 됩니다.
17. ⑯-8란과 ⑰-8란은 각 배출구별로 조업일수를 적습니다.
18. ⑯-9란과 ⑰-9란은 각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⑯-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⑯-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⑯-7) × 조업일수(⑯-8)
 나. ⑯-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⑯-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⑯-6) × 조업일수(⑯-8)
 다. ⑰-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⑰-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⑰-7) × 조업일수(⑰-8)
 라. ⑰-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⑰-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⑰-6) × 조업일수(⑰-8)
19. ⑱란과 ㉑란은 각 배출구별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 합계를 적습니다.

○ 수질오염물질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횟수 또는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횟수가 기재하는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3. ㉒의 "배출농도" 및 "일일폐수유량"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4. ㉒의 "일일배출량"은 "배출농도"에 "일일폐수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5. ㉓의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에는 ㉓의 "평균"란의 수치를 적습니다.
6. ㉓의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을 적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7. ㉓의 "평균"은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란의 각각의 수치와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8. ㉓의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평균"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9. ㉓의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은 "평균"란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합니다.
10. ㉔의 "유기물질"란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 ㉓의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이 큰 값을 적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변경허가·신고의 대상)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u>제2호아목</u> <u>·자목</u> 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u>각각</u>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 한다.	제5조(변경허가·신고의 대상) ① ----- ----- ----- ----- <u>제2호아목</u> ----- ----- ----- <u>이란</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② (생략)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 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 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 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 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 ----- ----- ----- ----- -----.
1. 영 별표 3 <u>제1호(같은 호 가 목22)부터 24)까지 및 다목4)</u> <u>는 제외한다</u>)에 해당하는 경 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1. ----- <u>제1호</u> ----- ----- ----- -----

사항의 변경 전 2. 영 별표 3 제1호가목22)·23), 같은 호 다목4), 같은 표 제2호가목·라목·마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영 별표 3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 영 별표 3 제2호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 ⑥ (생략) 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 ④ (생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u>돌려줘야</u> 한다. 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② (생략)	----- 2. ----- 제2호가목·라목·마목·바목·사목·자목·차목 또는 카목----- ----- ----- ----- 3. ----- 제2호타목: ----- ----- ----- 4. ----- 제2호나목·다목 또는 아목-----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반환해야</u> ----- --- 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u>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u>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통합환경관리계획서</u>의 작성 대행 업무는 <u>등록된</u> 기술인력이 수행할 것 <u><신 설></u> 2. <u>통합허가서류등</u>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④ <u>법 제11조의4제3항</u>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④·⑤ (생략)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	③ <u>법 제11조의4제1항제6호</u>----- ----- -----. 1. <u>통합환경관리계획서</u> 및 <u>연간 보고서</u>--- <u>각각</u> <u>등록된</u> ---- ----- 2. <u>연간 보고서</u> 작성 대행의 기 <u>초가 되는 자료를 5년 동안 보</u> <u>관할 것</u> 3. <u>통합허가서류등</u> 및 <u>연간 보고서</u>--- ④ <u>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u> 및 <u>제3항</u>----- ----- ---.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12조제2항 단서</u>의 “<u>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란 영 별표 3 제2호사목에 <u>따른 경우를 말한다.</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
--	--

기관 등) ①·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

1. ~ 10. (생략)

<신설>

제25조의6(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해당 호에 따른 사람이 대행하게 해야 한다. <후단 신설>

1.·2. (생략)

제25조의9(교육의 위탁)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기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악취

제25조의6(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

--.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9(교육의 위탁)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환경산업협회

2. 3.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제27조(기술작업반) ① (생략)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

2. 3. (현행과 같음)

4. 한국환경기술인협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시책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최적방지 시설의 기준 및 종류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기술작업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작업반원은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종별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1. ~ 5. (생략)

③ (생략)

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 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2. ~ 6. (생략)

<신 설>

7. (생략)

제31조(출입·검사 등) ① (생

②

경우 한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

-----.

1. -----

----- 기술검토

2.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서의 검토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1조(출입·검사 등) ① (현행)

략)

②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③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1. ~ 6. (생략)

<신설>

④ ~ ⑦ (생략)

제3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과 같음)

② -----

-----, 다만, 사업장이 연간 보고서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검사의 주기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작성을 대행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의 오염물질등은 자가측정의
항목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
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
질

3. (생략)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
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
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
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
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
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
물질

③ ~ ⑤ (생략)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
출) ①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
항 -----

수질오염물질

3. (현행과 같음)

4. -----

-- 원폐수를 -----
-- 원폐수에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
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최적 환경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허가조건 등의 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한 결과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간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법 제11조의2제1

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
록을 한 자 중 별표 16의2에 따
른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을 위
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
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를 확인하여 그 목록을 매년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
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할 수 있다.